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1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인등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
<신 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신 설>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

현 행	개 정 안
	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times \frac{B}{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하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1](일부포기)을 하는 경우 및 ② 피상속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조세회피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상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2](일부포기)을 하는 경우 및 ② 피상속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3] 등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이는 「**국세기본법**」의 경우는 이미 동 개정안과 같이 **한정승인(일부포기)한 경우와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

---

1)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3)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전체기간'과 '체납기간' 비율로 보험금을 안분한 금액임

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개정(2025. 1. 1.)하였다는 점[4] 및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수단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사례)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관련 법 개정 전·후 비교]

상속 구분		현 행		개 정	
		상속재산 (체납징수○)	고유재산 (체납징수×)	상속재산 (체납징수○)	고유재산 (체납징수×)
전부 상속	체납상태 납입無	-	5억원	-	5억원
	체납상태 납입有	-	5억원	5억원	-
한정승인(일부 포기)		-	5억원	5억원	-
전부 포기		5억원	-	5억원	-

주: 상속인인 사망보험금으로 5억원을 수령한 사례로 가정함

4)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은 7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 ---------.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경우는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음.[5)]

이에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안 제10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비밀유지) ① ~ ⑥ (생 략)	제86조(비밀유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단서[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세정보'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의미함.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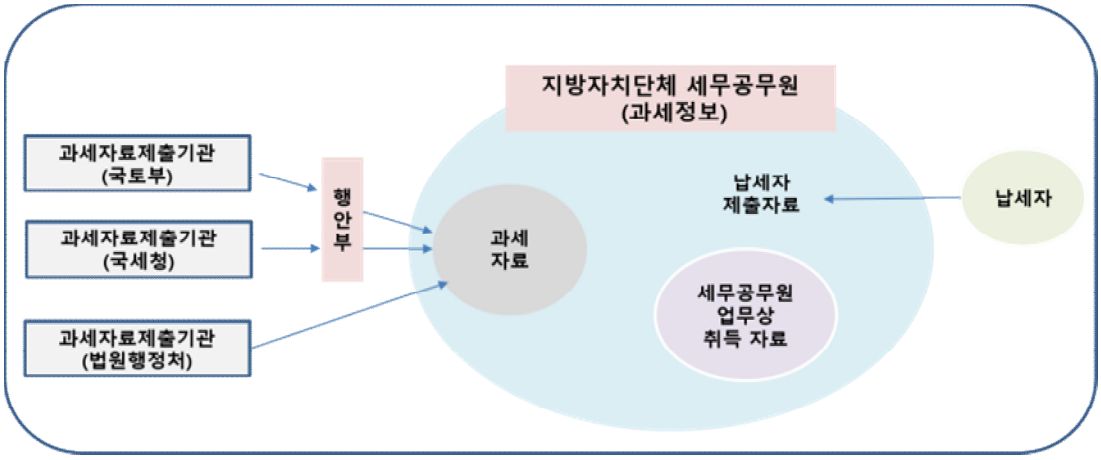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동법 제86조에서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사후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사용범위 제한 등 과세정보의 비밀유지관리를 위해 이행조치[7]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과세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미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8], 해외 사례에서도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9]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

7) 과세정보의 유출·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8)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9) (일본) 2년이하 징역, 100만엔이하 벌금, (영국) 1~2년이하 징역, 벌금형, (호주) 2년이하 징역, (미국) 1~5년이하 징역, 5,000~10만$이하 벌금, 공무원 해고 추가

4.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10]ㆍ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현행 20일간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현 행	개 정 안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95조(보정요구) ① --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①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②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는 경우,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10)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을 20일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불복청구 보정요구 제도 개요]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9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9조
- **(요구방법)**	보정요구서(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보정요구 내용 작성하여 우편 송달
- **(보정내용)**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각하사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사유로 규정
- **(직권보정)**	보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보정 가능하며, 보정 결과를 신청인(청구인)에게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로 통지
- **(규정비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20일간 / 심판청구: 상당한 기간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20일 이내 / 심판청구: 상당한 기간

간단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 **이의신청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가 늦춰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정요구 기간에 대해 명문상 규정과 실무상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정요구 기간을 '20일간'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세자가 신속하게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보정요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11].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1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